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화 지원으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①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기업 ※ (참고 1) 참조

- * 업력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 (참고 2) 참조
- *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② 지원규모 : 13社 ※ 기업당 50백만원(국고 25, 자부담 25)

기업당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금(B, 50%)	자부담(C, 50%)	
		현금(15%)	현물(35%)
50백만원	25백만원	7.5백만원 이상	17.5백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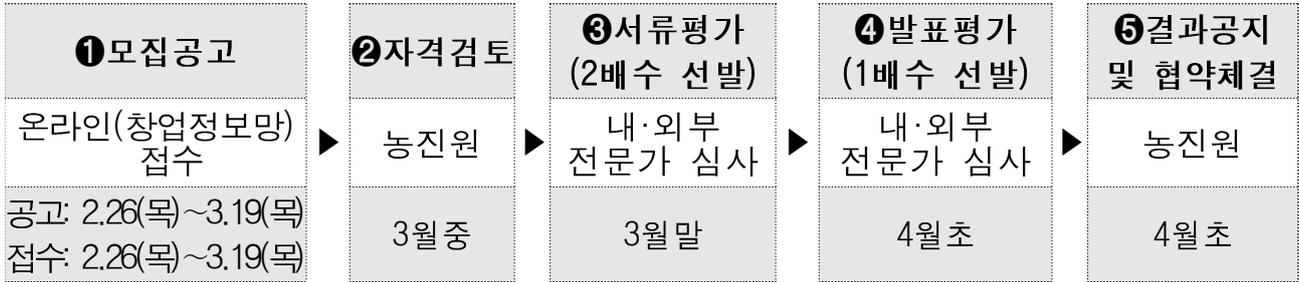
- * 자부담 중 현금(15%)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③ 지원내용

-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
-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
- * (참고 5) 사업비 예산 비목 참고

④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⑤ 모집 프로세스



* 사업 추진 일정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⑥ 사업 문의

- 사업신청서 접수처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 문의처 : 전정남 전임연구원(063-919-1426)

2 모집 및 신청

① 모집기간 : 2026. 2. 26.(목) ~ 2026. 3. 19.(목) 15:00까지

* 모집공고 마감시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로 인정함.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 및 접수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제출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비 고	< 농식품창업정보망 이용 주의사항 > (용량제한) 업로드 시 용량제한(약20MB)이 있으므로 주의 (접수시간) 모집마감일 마감 시간 엄수 필수			

* 기존 가입회원의 ID/PW 분실 또는 진행이 안되는 경우, 063-919-1426으로 문의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육성기업 사업 신청 내역’ 內 ‘접수중’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기간 내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제출자료 삭제)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 (dream@koat.or.kr)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

③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양식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1.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서류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대표자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	붙임 [서류 2]
	3. 현물 사용 계획서 1부	붙임 [서류 3]
	4.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5. 기업 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개인사업자로 기업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6.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가점서류 (해당시) * 미체크 시 가점 대상 제외	8-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인 경우 선택 *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붙임 [서류 1]
	8-2.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기업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기타서류 (선택사항)	9.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주의)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2.20~'26.3.19)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이외, 기타서류 기간제약 없음)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신청자격

- 그린바이오기업 * (참고1) 참조
 - * 업력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 *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⑤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1항1호마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징수유예 포함)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인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자격검토 및 선정평가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사업아이템,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未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
- 가점대상
 - * 아래의 가점 요건 해당 시, 서류평가에 각 1점 적용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1점)

- *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내 입주중인 기업
-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②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기업(1점)

-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 예정

② 평가절차

- 자격검토 통과기업 대상,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평가단계만 적용(누적반영 아님)
- 단계별 선정결과는 각 기업의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



* 사업 추진 일정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③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 단, 서류평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Q&A)을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정(최종 선정규모의 1배수 선정)
 - * 이외, 평가과정에서 부적격 사항 발생, 사업포기 등을 고려 차순위 3社(14~16위) 예비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발표
문제인식 (20)	· 제품의 개발동기 및 필요성	10	10
	· 제품의 사업화에 따른 사업 확장가능성	10	10
실현가능성 (30)	· 제품의 사업화 단계(현황)	15	15
	· 제품의 차별성	15	15
신뢰성 (50)	· 제품의 사업화 구체화 방안 등 수립	15	15
	· 사업비 사용계획 등	15	15
	· 신뢰성 확보 계획(핵심 기술(특허·인증 등))	20	20
가점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지방정부 확인)	(1)	해당없음
	·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기업(농진원 확인)	(1)	
합계		100	

4] 최종선정

- 발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상위 1~13위 기업)하며,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결과통지)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E-mail)로 개별 통보
- * 홈페이지 주소: www.koat.or.kr

5] 협약체결

- 협약기간(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 지원금은 '26년 1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
- 협약체결 방법 : 대면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 체결
- * 협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후 별도 공지함
- 기타사항: 최종 선정기업(협약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6개월)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4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 기업당 50백만원(국고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50%)	자부담(50%)	
		현금(15%)	현물(35%)
50백만원	25백만원	7.5백만원 이상	17.5백만원 이하

- * 자부담 중 현금(15%)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 자부담 50%를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 사업비 지급
 - (협약시점) 정부지원금의 70%(17.5백만원) 선금 지급
 - (사업비정산 후) 정부지원금의 30%(7.5백만원) 잔금 지급
-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총 집행액에서 정부지원금/자부담 사용액을 고려하여 잔액 환수처리
-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공정개선 개발	· 제품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드는 개발 비용 등
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등	· 자체적 수행이 어려워 외부 업체에 의뢰가 필요한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용역 등)
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 임차	·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기구·장비·설비, S/W 등 임차비용 * 사무용 집기, 가구 기구, PC 등은 불가
재료비 등	·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 구입비

①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평가 중 유의 사항

- 발표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간 거래가 불가함
-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사항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종료일+6개월)이 청구되므로 최종 선정 예정 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① 본 사업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 현물 자부담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법적 정의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법령정의
<p>1. 종자</p> <p>「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p>	<p>“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p>
<p>2. 동물용 의약품</p> <p>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p>	<p>“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p> <p>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p> <p>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p> <p>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p>
<p>3. 미생물</p> <p>「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p>	<p>“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p>
<p>4. 곤충</p> <p>「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p>	<p>“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뽕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5. 천연물</p> <p>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p>	<p>“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產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p>
<p>6. 식품소재</p> <p>「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p>	<p>“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p> <p>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p>

* 관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분야별 예시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설명
1. 종자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New Breeding Techniques)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증식, 보급하는 산업 [예시] 달코미 미니수박, 이상기후 대비 내재해성 종자 등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동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기타 조제용 물질로, 세균·곰팡이 등 감염유발 유기체의 성장을 억제·제거하는 백신 등의 기술 [예시] 담뱃잎 추출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백신, 구제역 백신 등
3.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작물의 생장 촉진, 병해충 억제, 토양 개선, 축산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농축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유익한 미생물 [활용분야] ▶ 생물비료: 질소고정·인산용해*, 유기물 분해를 통해 영양 흡수능력 강화, 토양환경 개선 및 화학비료의 대체로 환경오염 최소화 * 질소고정·인산용해: 질소, 인산염 등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 ▶ 바이오 농약: 항생물질·대사산물 분비 또는 미생물이 병해충에 기생함으로써 방제효과 발휘 ▶ 사료첨가제: 특정 미생물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조절하여 소화 효소 분비, 섬유질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사료 내 영양분 흡수를 도움 ▶ 축사 환경개선: 축사 내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여 질병예방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
4.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식용, 사료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산업 [활용분야] ▶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만든 단백질바, 쿠키 등 ▶ 사료용: 개,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사료, 양계, 양식 등 배합사료 ▶ 비료용: 곤충 배설물, 사체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 소재용: 피브로인(Fibroin) 의료소재용 누에, 화장품 원료, 섬유 및 패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
5.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식물, 동물, 미생물, 광물 등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시] 알로베에라 추출 젤, 프로폴리스, 조개에서 추출한 항바이러스제, 병풀추출분말,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 모르핀 등
6. 식품소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로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등의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영양·보존성 강화 및 맛·향·색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됨 [예시] 미생물 천연색소, 천연 방부제, 천연 감미료, 3D 푸드프린팅 잉크, 식이섬유, 오메가-3 등

* 관련: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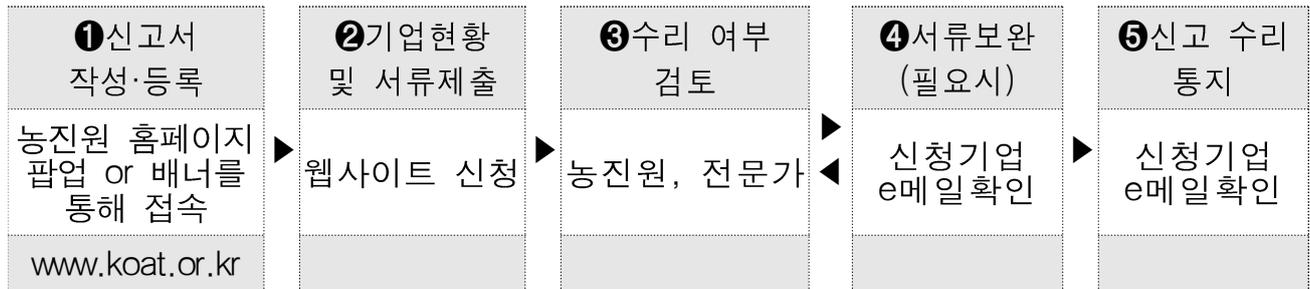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 (접수시기) 상시접수
-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절차



-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신고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1.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5-2. (해당시)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e메일 발송)
-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참고 3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온라인 제출 요령

구 분	제출 서류	양식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1.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서류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대표자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	붙임 [서류 2]
	3. 현물 사용 계획서 1부	붙임 [서류 3]
	4.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5. 기업 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개인사업자로 기업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6.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가점서류 (해당시) * 미체크 시 가점 대상 제외	8-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인 경우 선택 * 농식품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 (안내) 선정평가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붙임 [서류 1]
	8-2.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기업 * (안내) 선정평가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기타서류 (선택사항)	9.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비 고	※ 필수서류 첨부 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한글파일 작성, 별도양식 없음)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농식품창업정보망 이용 주의사항 > (용량제한) 업로드 시 용량제한(약20MB)이 있으므로 주의 (접수시간) 모집마감일 마감 시간 엄수 필수	

* [필수서류] 서류명 기입 및 번호 순서대로 해당 항목에 제출(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 [기타서류] 필수서류외 별도로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압축 파일명	1. 필수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 2. 기타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						
첨부서류 업로드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첨부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사업계획서 (필수)</td> <td style="width: 40%;"><input type="text"/></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td> </tr> <tr> <td>개인정보동의서 (필수)</td> <td><input type="text"/></td> <td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td> </tr> </table> </div>	사업계획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사업계획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p>작성 요령</p>	<p>[신청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린바이오 분야 신청서 작성 2. 사업화 과제명 : 제안 사업화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3.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명 동일 4.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선택 5. 분량 : 양식을 유지하여 한 장에 맞춰 작성 <p>[사업계획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분야 및 업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분량을 조절하여 기술 2. 파란색 안내문구 및 안내박스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후 안내박스 가이드는 삭제하여 제출 3.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되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을 기술시 객관적인 데이터 사용 및 출처 제시 요망 4. 제출 파일 중 신청서, 사업계획서 첫 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5. 사업계획서 내의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운영에 사용되므로 [참고 5]의 사업비 예산비목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작성 6. 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 : 15페이지 내외(기타 참고자료 제외)
<p>유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 될 수 있음 3. 접수된 서류와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참고 5

사업비 예산 비목(사업화)

비목	세부 사항	비목 정의
인건비	직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본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협약기간 내)채용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현물부담금 제외) 총 사업비의 20% 이하 구성 * (현금) 대표자의 경우 현금으로 사업비 지급 불가 * (현물) 기존직원(협약 전 채용)·대표자 인건비 현물계상 가능
재료비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 구입비 * 총 사업비의 40% 이하 구성
기계장치	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 (현물자부담으로만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설비, S/W 등 기존 구매건에 대한 현물계상 * (현물) 취득(공급)가액의 10%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로 작성 * (정부지원금+현금) 기계장치 등 자본적 자산구매 불가
외주용역비	<p>시제품 제작</p> <p>제품기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급 * 사업 결과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개발 비용
지급수수료	<p>전문가 컨설팅</p> <p>시험분석</p> <p>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p> <p>기술이전·가치평가</p> <p>지식재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해외 운반비, 보관료 등 * 박람회 참가 시 박람회 운영사로 최초 납부하는 비용은 임차료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수수료)참가비로 간주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용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및 회계정산 수수료 * (정부지원금+현금) 회계감사비 35만원 필수 반영(부가세 별도)
임차비	사무실, 기자재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사무실(본점,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장(제조가공) 임대료 등 * (정부지원금+현금) 사무실, 공장 등 부동산 임차비 사용 불가 * (현물) 아이템과 관련된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계상가능. 단,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부동산임대업' 표기필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설비, S/W 등 임차 비용
광고선전비	<p>포장지·홍보물 제작</p> <p>디자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TV·일간지 등의 직접 광고홍보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구 분	세부 내용
□ 자가진단표	- 가점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표 체크
□ 일반 현황	- 사업화과제명, 신청분야, 신청기업 등에 관한 개요
□ 사업계획서	- 1. 신청자 개요 ~ 4. 사업계획까지 관련내용 작성
I 신청자 개요	- 신청자(대표자) 인적사항, 참여인력 현황 등 작성
II 기업 개요	- 신청기업명, 기업소개, 재무현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작성
III 계획 개요	- 사업화과제명, 아이템 및 계획 등 작성
IV (상세)사업계획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 작성

《서류1》기업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 신청서

1 자가진단표

해당할 경우 체크

가점 대상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에 해당한다.(1점) *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input type="checkbox"/>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1점)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1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한다.	<input type="checkbox"/>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타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	<input type="checkbox"/>
3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상태이다.	<input type="checkbox"/>
5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input type="checkbox"/>
6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input type="checkbox"/>
7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 제외대상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중도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환수 조치됨

사 업 계 획 서

작성년월일	
기업명	
대표자 (신청자)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

I

신청자(대표자) 개요

*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연 령		만 세 <i>공고마감일 기준 작성</i>	
학 력	기 간		학교명	수학 상태	전공 (학 위)	기술자격 (분야, 등급)
	부터	까지				
	<i>'1332</i>	<i>'1621</i>		<i>졸업 수료 중퇴</i>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부터	까지	근무처명	직위	주요제품	
	.	.				
	.	.				
	.	.				
관련 업종 총 근무 기간			년 개월			
기타	연구 개발실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비보유				
	생산 방식	<input type="checkbox"/> 직접생산 <input type="checkbox"/> 위탁생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 ○ ○						

II

기업 개요

1. 개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업종			주 생산품		
매출액	2023	백만원	고용인원	2023	명
	2024	백만원		2024	명
	2025	백만원		2025	명
투자실적	창업~25년	백만원	* 창업 이후 총 투자유치 금액 표기		
	2023	백만원	* 대표 투자처 표기		
	2024	백만원			
	2025	백만원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사업장 현황	(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대지 : 평, 건평 : 평				
기업 소개 (요약)					
특기 사항 (기업의 특기사항 연혁 순으로 기재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2.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매출액은 증빙(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 해야함. (주의) 증빙이 거짓일 경우 '26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총자산, 총부채 등 재무제표가 미발급되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

3.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 . 등록번호/ 출원 . 등록자수
1				(출원)01-1234-1234567
2				(등록)01-1234-1234567
3				
4				

Ⅲ

사업 계획 개요

과제명	(예시: 000식물에서 000원료 추출 기반, 000에 도움이 되는 000(제품명) 수분크림 개발)					
제품명	* 사업화 과제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 명칭					
규격		생산규모		(예상) 가격		
아이템 소개	※ 동 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의 핵심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그린 바이오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 (ex) 000식물에서 000원료를 추출한 성분이 00에 도움이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000특허로 출원하여 화장품으로 제품화를 진행중입니다.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제목 >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사업아이템에 접목된 핵심기술과 이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작성					
(현재 기준) 사업화 추진현황	사업아이템 발굴 조사 및 기획	제품 및 생산 시설 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공정개선 상품화 개선	양산화	출시.판매 및 홍보마케팅
		√				
	※ 현재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업단계를 체크(중복 가능)하고 관련 사업화 내용 및 현황을 기재 예) 연구개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중, 개발 완료, 고도화, 제품 출시 등					
'26년 기술 및 제품의 개선 사항	※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26년 사업 계획	※ 현 추진단계를 토대로 2026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목표, 추진방안, 예상결과 등)					

IV

(상세) 사업 계획

1. 문제인식

1-1. 제품의 개발동기 및 필요성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동기 및 필요성을 기재

—

—

1-2. 제품의 사업화에 따른 사업 확장가능성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사업화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 및 아이템 핵심 기술/서비스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기재

—

—

2. 실현가능성

2-1. 제품의 사업화 단계(현황)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제품의 사업화 단계(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2-2. 제품의 차별성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제품의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한 현황 또는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3. 신뢰성

3-1. 사업화 구체화 방안 수립

전체로드맵(표)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아래 내용은 단순 예시자료이며, 협약기간 내 달성가능한 추진일정으로 작성

구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연구시설/장비 구축										
3	제품개발 원재료 구입										
4	기술개발, 시험분석										
5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6	시제품개발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8	최종보고서 제출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단기(협약기간 내) 목표, 중·장기 목표(2~5년) 계획을 수립(단기목표(협약기간 내)를 중점으로 작성)

○

—

3-2. 사업비 사용계획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협약기간 내 사업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아이템의 효과적인 개발을 중점으로 상세히 작성

○

-

□ 사업비 세부내역(표)

-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
 ※ 계획한 비율을 토대로 작성, 가이드: 정부지원금(50%)+현금(15%), 현물(35%)
 ※ 작성 시 협약기간 내 사용가능한 범위로 작성권장(자금소요 예상금액이 큰 순서, 대 → 중 → 소)
 ※ (주의) 사업비 사용은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갖추어 증빙 제시가 가능해야함

< 사업비 세부내역(정부지원금+대응자금) >

비 목	산출근거	금액(단위: 천원)	
		정부지원금(50%) +대응자금(현금 15% 이상)	대응자금(현물 35% 이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현금) 홍길동×참여율100%×급여2,500천원×9개월(신규채용만 가능함) - (현물부담금 제외) 총 사업비의 20% 이하 구성 현물 20,000천원 계상 시에도 정부지원금+현물 사용액은 10,000천원을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홍길동×참여율100%×급여2,500천원×9개월 (대표자 및 기존직원 인건비 계상 가능) - (현물) 총 사업비의 비율제한 없음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총 사업비의 40%이하 구성, 취득(공급)가액 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총 사업비의 40% 이하 구성, 취득(공급)가액 기준 작성 		
기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취득(공급)가액의 10%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로 작성 - (취득가액) 1,000천원 × 10% = 100천원 	(공란)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사업화에 필요한 외주용역 		(공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사업화에 필요한 외주용역 		(공란)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0건) 등 		(공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회계감사수수료 350천원 필수반영 	350	(공란)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사업화에 필요한 000장비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월 임차료 × 00개월(9개월 이내)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박람회 리플렛 제작(단가×수량) 		(공란)
합 계		32,500	17,500

* 비목 작성 시 (참고 5) 사업비 집행비목 참조

3-3. 신뢰성 확보 계획(핵심 기술(특허·인증, 효능, 안전성, 개선 등))

※ (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 상단에서 기재한 보유현황을 기반으로 향후 확보(필요)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유한 기술자료는 기타 참고자료로 후첨

-

-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연령	현소속 직위	최종학력			담당업무 (연락처)
			학교명	전공	학위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26. 5
2	해외 영업(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3	R&D	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	
4			
5			

4. 2026년 성과지표

4. 성과지표(2026)

- ※ 협약기간내 목표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작성할 것
예) 매출액 000억원 창출, 제품개선 0건,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0건, 국내인허가 취득 0건 등
- ※ 계량지표 1개 이상 필수 작성, 비계량지표 필요시 작성
- ※ 아래 계량지표 항목 중 한가지 이상될 경우 적합판정
-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

구분	지표명	2025 성과	2026 목표
계량	· 매출액(단위 : 백만원)	3,000	5,000
	· 지식재산권 출원(단위: 건)	0	2
비계량			

기타 참고자료

제품(기술, 서비스) 참고 이미지, 인증 및 상장 등 기타서류 목록

- 2페이지 초과 시에 초과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필요시) 기타서류는 선택제출사항이므로 목록만 요약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 자료는 별첨으로 압축하여 제출

제출서류 명칭

《서류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h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2>
수집 및 이용 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담당자 성명	김동규	
<p>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p>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p>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p>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p>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p>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p>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중</p>		

《서류3》 지원기업 현물 사용 계획서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지원기업 현물 사용 계획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협약기간			

현물 사용 계획

▶ 인건비 (대표자 및 기존직원) ※ 타 사업의 현물로 등록된 인력이 포함된 경우 참여율 100%초과 불가

성 명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 (인건비)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전년도 근로소득 없는 경우(소득증빙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최저임금액기준 (주휴포함)
소 계			

▶ 기자재·재료 등 ※ 기존 구입내역 증빙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물 불인정

품 명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설치장소 등)
		* (기자재) 취득(공급)가액의 10%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 * (재료) 시약, 도료 등 구입가액	
소 계			

▶ 사무공간 임차료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임대업 미표기시 현물 불인정

건물(호, 실)명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 (임차료) 월 임차료 × 00개월(9개월 이내)	
소 계			
합 계			

- [첨부] 1. (인건비) 대표자 또는 직원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개인정보동의서
 2. (기자재) 기자재 구입·보유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3. (임차료) 사무공간 임차 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임대업 표기 필수), 사진

위와 같이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 선정과제와 관련하여 협약기간 동안 대응자금(현물)을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